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

2024. 9. 24.(화)





목 차



I.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1
1. 필요성	
2. 그간경과	
I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4
1. 개념	
2. 관리체계	
II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 계획(안)	16
1.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 지원 확대	
IV. QnA	20

I.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필요성

1] 민감한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환경보건정책 필요

- (대사량 ↑) 성인보다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 많고, 호흡량이 높아 유해물질 노출량이 큼
- (체내축적 ↑) 독성물질 해독능력이 덜 발달되어 화학물질 제거 및 배출능력이 약하여, 체내 축적성이 강함
 -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18~'20, 환경부), 프탈레이트류*(DEHP) 농도가 어린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 연령대별 DEHP 농도 : ▲영유아 32.2 μ g/L, ▲초등학생 39.3 μ g/L, ▲성인 16.8 μ g/L
- (면역 체계 ↓) 성장·발달은 왕성하나 면역체계·신체조직이 미숙하여 유해물질 노출 시 피해가 큼



☞ (환경성질환에 취약)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라도 어린이에게 영향력 크고, 환경성질환 발병 증가

※ 전연령 환경성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

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필요성

② 어린이 주변 환경의 잠재적 위해 요인 증가

- **(실내활동 증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배출된 유해물질에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 가능 * 주중 평균 1시간 미만의 실외활동[19, 어린이노출계수(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 노출 증가)** 과거에 물, 돌, 나무 등 자연물이나 단순한 놀잇감을 가지고 활동 ➔ 최근에는 인형, 키보드, 로봇 등 놀잇감 다양 ➔ 화려한 색상, 촉감 기능 등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③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全)사회적 협력 필요

- **(사회전체 관심 필요)** 어린이는 스스로 안전 확보 능력 및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
➔ 사회 전(全)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
- **(관계기관 협력 필요)** 중앙부처, 산업계, 지역사회 및 가정이 서로 협력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추진

2.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그간 경과

① 세계 최초로 「환경보건법」 제정(2008.3.), 시행(2009.3.)

- (목적)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 (법 제23조~제25조) 어린이 건강보호 관련 규정 포함

②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세부시행계획 수립(2010~)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수립('20.12. 부처합동)
 -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대책 포함(관리사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발굴,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운영 등)
-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시행계획(2023~2027)」 수립('23.1., 환경부)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中 '어린이 환경보건분야' 세부 추진계획 마련
- 2024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24.2., 환경부)
 - 어린이 환경안전관리제도 현장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중심
 - ※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을 포함

I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념

①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 '어린이'란 13세 미만 사람(법 제2조제7호)
-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8호)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가 도시공원, 휴게시설, 식품접객업 영업소, 주택단지 등등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신설(안)]체육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봉봉뽕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어바운스가 설치된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8. [신설(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 개정령안 입법예고('24.7.26~'24.9.4.)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념

□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종류

○ (관리대상)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활동공간 135,375개소('23.12. 기준)

(단위 : 개소수)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신설예정)
합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체육관(신설예정)	특수학교	놀이제공 영업소	지역아동센터
135,375+α	81,436	30,923	8,441	6,175	6,248	+α	194	1,958	+α

* 출처 :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도서관) 교육부 '교육통계' 등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념

②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환경부 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제1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2) 납은 합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폼알데하이드 0.002mg/m³·h 이하, 툴루엔 0.08mg/m³·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m³·h(페인트) 또는 40mg/m³·h(벽지) 이하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다. 삭제 <2021. 7. 6.>
- 라. 삭제 <2021. 7. 6.>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μg/m³이하일 것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μg/m³ 이하일 것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념

□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시행령 별표2 정리)

구분		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제2호	가목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질량분율로 90mg/kg 이하 강화
	나목	①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합량이 0.1% 이하 신설
제3호	목재	① 폼알데하이드 0.002mg/m ³ ·h 이하, ② 톨루엔 0.08mg/m ³ ·h 이하, ③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m ³ ·h(페인트) 또는 40mg/m ³ ·h(벽지) 이하
제4호	가목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및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 (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제4호	나목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 크롬: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다목	① 기생충란: 미검출
제5호	가목	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나목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mg/kg 이하
제5호	다목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합량 : 0.1% 이하 신설
	가목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μg/m ³ 이하
제6호	나목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μg/m ³ 이하

※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22.4.7. 시행), 시행일 이전 설치 시설 '26.1.1.부터 적용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관리체계

①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 (기준 준수 의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 의무 부여(법 제23조제4항)
- (기준 적합 확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검사(법 제23조제6항)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④ 기준 준수 의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⑥ 기준 적합 확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다만, 확인검사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 ·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신축은 면제 제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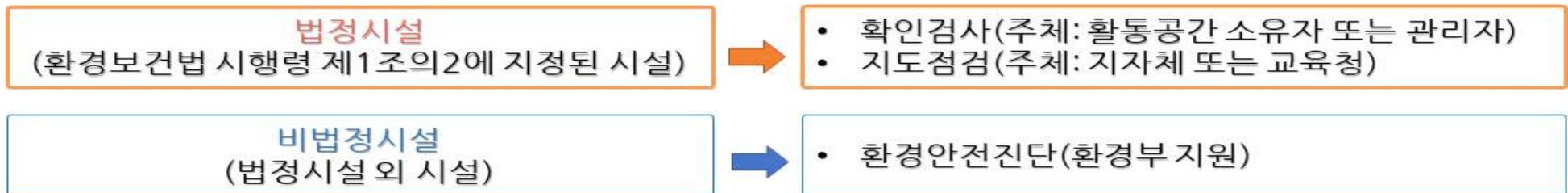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유의) 확인검사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 가.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금속 외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하이드 등**
- ⑤ **확인검사 면제 조건**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22호)」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관리체계

□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적합 여부 확인 체계



□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수선**한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확인검사를 진행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관리체계

2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부적합 시설 개선

- (부적합 시설 개선)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 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제공(법 제23조제9항)
- (개선 결과 보고) 3개월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후 이행 결과를 지자체 등에 보고(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⑤ **감독기관 역할(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감독기관 역할(시설개선 명령)**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 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어린이집**, 제6호 **기타유원 시설 영업소** 및 제7호 **놀이제공 영업소**, 제8호 **지역아동센터(신설 예정, 입법예고 참고) 시설**

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관리체계

③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기관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

- **(역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시험·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관리자가 확인검사 신청서 제출 시 / 지자체 등 감독기관 지도·점검 시
- **(지정)** ▲ 국립환경과학원(당연 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당연 기관),
▲ 비영리법인 중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 비영리법인 시험·검사 기관 현황 (23.12. 기준 7개소 지정) >

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연월일
제1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608	2012.11.14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68	2013.04.05
제3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	031-428-3817	2013.05.15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2284-1656	2013.11.07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150	2015.02.16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2017.05.29
제10호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로 63-12 동탄비즈타워 1007호	031-601-9144	2023.06.21

II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 계획(안)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 계획(안) ... 어린이활동공간 확대

1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확대 ...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4년말)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신 설>	제1조의2(정의) 4. ----- 초등학교의 교실, 학교도서관 및 <u>체육관</u>
<신 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u>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u>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u>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 전단에 따른 <u>시행일 전에 설치된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2032년 9월 1일 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u> ②부칙 제1조에 따른 <u>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 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u>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생 략)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 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1. ----- ----- ----- ----- ----- ----- ----- <u>제6호,</u> <u>제7호 및 제8호의 시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 계획(안) ... 지원 확대

①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계획

- (환경안전 진단) '29.9.1. 법 시행 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전수조사(국고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9.
진단 개소수(안)	4,000	600	700	800	800	900	200
소요 예산(안)	2,000	300	350	400	400	450	100

* '24년 현재 600개소 신청 받아 환경안전진단 중

- (시설개선 지원) 개선방법 가이드라인 제공(컨설팅),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우선 지원

② 초등학교 체육관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계획

- (환경안전 진단) '32.9.1. 법 시행 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전수조사(국고 지원)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진단 개소수(안)	4,000	400	700	700	700	700	800
소요 예산(안)	2,000	200	350	350	350	350	400

* 위와 별도로 교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 예정

IV.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QnA

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누구이며, 이러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등)이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 중 한 곳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확인검사 신청 주체 및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으로 중금속 안전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토양 안전기준, 목재 방부재 안전기준 등이 있습니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감독기관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 그리고 감독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접수한 때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3.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거나 지도·점검에서 합격한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축 현장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분 완공된 현장입니다. 부분 완공된 시설에 한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별 준공시점이 크게 달라 일부 시설에 대해 감독기관이 사용 승인할 예정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분 완공된 시설은 확인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5. 기본검사는 무엇이고 정밀검사는 무엇인가요?

-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료(페인트)나 마감재료는 보통 기본검사 후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프탈레이트류 및 토양·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은 간이검사 없이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6.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제23조제4항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실제 지키고 있는지를 수시 또는 일정 기간마다 동 법 제29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은 환경부에서 개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그간의 지도·점검 이력을 확인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7. 기본검사 결과(부적합)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나요?

- 기본검사인 육안(맨눈)으로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곳은 기본검사 결과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육안(맨눈)으로 충분히 시설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경우(금속에서 녹이 발생했거나, 도료의 벗겨짐, 시설물 크랙(금) 같은 경우)는 위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